

## 미국 독립선언서 주석\*

안경환

서울대학교 법학부 교수

미국의 독립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독립인 동시에, 영국의 제도에 대한 식민지 영국인의 혁명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독립인 동시에 혁명의 선언이다. 미국독립 혁명의 본질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직접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1세대는 ‘대표 없는 과세’의 부정으로 상정되는 정치철학의 선언으로 이해했다. 종교적, 신학적 의미에 주목하여 인간의 자유를 선사하기 위한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으로 규정지은 사람도 있었다. 19세기 말에는 독립혁명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주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독립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한 소위 ‘진보적 학파’가 등장하여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50년대에 들어와서 ‘합의이론’이 등장하여 John Locke적 자유주의의 구현으로 성격을 규정지웠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공화주의 이론이 등장하여 합의이론을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적 재산권의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Locke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덕목(virtue)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이론이 함께 미국혁명의 이념적 배경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글은 독립선언서의 번역과 주석작업의 시도이다. 합의이론을 기초로 공화주의 이론을 보충하여 주석을 시도하였다. 미국사연구회가 제시한 기준의 번역(1992)을 토대로 하되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수정을 가하였다.

독립선언서를 텍스트로 분석할 때, (a)前文(preface) (b)구체적 사실의 열거 (c)결론(conclusion)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 전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의 원리를 제시한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을 이룬다. 제2부에서는 영국 국왕의 구체적인 압제의 예를 열거한다. 제3부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영국과의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문서를 종결한다. 결론의 제1부와 2부는 근본적 성격이 다름에서 불구하고 문서가 지향하는 논리와 목표에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구체적인 불만을 근거로 한 혁명과 독립을 선언한 연유가 주된 내용으로 보이나, 기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국제지역원 2000년 국제지역연구 지원사업 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독립선언서 자체를 독립된 연구대상으로 한 국내 문헌은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대부분의 독립선언서의 번역문은 구체적 사실의 열거 부분을 생략한 채 전문과 결론만을 담고 있다. (예: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 발행, 1987; 최대권, 1986: 384). 드물게 미국 독립선언서 전문을 번역한 시도는 「미국사의 기본사료」(미국사연구회 옮기고 역음, 1992)에 보인다. 이 글에서의 번역은 이 책에 실린 번역본을 기초로 하고 법적 용어와 합의를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정을 가했다.

핵심의 내용은 영국제국의 정치체계를 유념하면서 천명한 정부론의 일반원칙이다. 일반적인 정부론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영국의 정부형태와 정치체제는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2부에 열거된 사실들은 영국적 제도에 대한 위반임을 암시적으로 연결하고 있다.

독립선언서에는 '영국의회'(Parliament)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 사실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식민지인들의 헌법이론에 의하면 식민지는 국왕에 대한 충성의무만 부담할 뿐, 의회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국에 대해 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국왕(King)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리였다. 둘째, 이렇듯 영국의회를 직접적인 공격의 표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영국의회 내에서 식민지의 주장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의원도 상당수 있었기에 인기가 없는 국왕 George 3세에 대해 공격의 표적을 집중함으로써 의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기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고려일 수도 있다.

독립선언서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독립 이전에 끊임없이 논의되던 '英國 臣民의 권리'(rights of British subjects)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영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고 국왕 대신 국민(people)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영국신민의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후일 제정된 연방헌법의 전문에 분명하게 천명된다. "우리들 미합중국 국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은… 이 헌법을 제정한다"(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라는 선언은 바로 군주주권에 복속하는 신민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 개인의 지위가 바뀌었음을 선언한 독립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다.

## I. 서 론

### 1. 미국 독립선언서(Declaration of Independence)의 법적 의미

#### (1) 미국 독립의 성격

1776년 7월 4일에 세상에 나온 독립선언서는 미국이 연방 정부 차원에서 공적으로 공표한 최초의 국가문서이다.<sup>1)</sup> 이 문서를 바탕으로 연방헌법이 제정되었

1) 공식적 역사적 문서로서 '독립선언'으로 불려지는 문서에는 3 개의 텍스트가 있다. 첫째는 초벌(rough) 저널(Journal), 둘째는 첫째를 '교정한'(corrected) 저널이며, 마지막으로 대륙회의의 위원들이 서명한 양피지(parchment) 텍스트이다. 이중에서 가장 '공적'인 문서는 두 번째 저널에 기록된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초벌 저널 텍스트 위에 철자, 구

는 바, 헌법은 이 문서에서 천명된 정치철학의 원리를 현실적 법규범으로 구체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독립선언서에서는 사법적 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가 도출되지는 않는다.<sup>2)</sup> 즉, 구체적 사건에서 판결의 근거가 되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보유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는 미국 헌정을 규율하는 근본원칙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미국의 독립은 영국으로부터 미국인의 독립인 동시에, 영국의 제도에 대한 식민지 영국인의 혁명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Baylin, 1967, 1992<sup>3)</sup>). 따라서 독립선언서는 독립인 동시에 혁명의 선언이다. 미국독립 혁명의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 직접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1세대는 ‘대표 없는 과세’의 부정(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으로 상징되는 정치철학의 선언으로 이해했다(Ramsey, 1789). 종교적 신학적 의미에 주목하여 인간의 자유를 선사하기 위한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투쟁으로 규정지은 사람도 있었다(Bancroft, 1834-75; Ryu, 1997<sup>4)</sup>). 19세기 말에는 독립혁명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에 주목하여 경제적 이해관계가 독립의 주된 요인으로 파악한 소위 ‘진보적 학파’(Progressive School)가 등장하여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Beard, 1913). 1950년대에 들어와서 ‘합의이론’(consensus theory)이 등장하여 John Locke적 자유주의의 구현으로 성격을 규정지웠다(Hartz, 1955). 그러나 1960년대부터 공화주의(republicanism)이론이 등장하여 합의이론을 수정하였다(Baylin, 1967, 1992; Pocock, 1975; Wood, 1969). 그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적재산권의 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Locke적 자유주의와 공동체에 대한 덕목(virtue)을 중시하는 공화주의 이론이 함께 미국혁명의 이념적 배경으로 인식되고 있다(안경환 · 김종철, 1999: 152-181).

## (2) 배경

영국인이 대서양을 항해하여 신대륙에 정착한 이유는 다양하다. 자신의 경제

---

두점, 쉼표 등 문법적 교정을 가했으며 이에 덧붙여서 2개의 단어를 삭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제2의 저널 텍스트를 사용하였다. 초벌 저널과 양피지 저널은 Carl L. Becker,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 Study in the History of Political Ideas*, Vintage Books, 1970, pp. 174-185에 실려 있다. 대륙회의에서 채택한 독립선언서 이외에도 1776년 4월과 7월 사이에 각급 행정단위에서 채택된 독립선언서가 버지니아 주의 독립선언서를 포함하여 적어도 90개의 ‘기타 독립선언서’(‘Other’ Declarations of Independence)가 존재한다(Maier, 1997: 48).

2) 이 문제를 정식으로 다룬 판결은 없다. 그러나 헌법전문(Preface)의 법적 효력을 부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Jacobson v. Mass.* 197 U. S. 11, 1905)에서 유추할 수 있다.

3) 이 번역서에 대한 필자의 서평은 안경환, 1999.

4) 이 책에 대한 서평은 김철수, 1988.

적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녀온 사람도 있고, 모국의 힘을 증강시키기 위한 식민지경영을 위해 이주한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 박해를 피해 이주한 ‘순례자’(Pilgrims)들도 있다. 어쨌든 식민지의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적으로 번성하자 영국정부는 이들을 규제하는 법률을 대량으로 제정하였다. 7년 전쟁(French and Indian War)이 종결된 1763년 이전까지는 식민지에 대한 규제는 대체로 대외무역에 한정되었을 뿐, 대내문제에 있어서는 식민지에게 고도의 자율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7년 전쟁의 종결 이후 본국정부는 막대한 전비로 인해 누적된 국가부채를 식민지로부터 충당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식민지의 불만과 저항은 예상된 것이었다(Gerber, 1995: 19-20).

1775년 4월 19일 보스턴 근교 도시 Lexington과 Concord에서 매사추세츠 식민지의 민병대(militia)와 영국 정규군(Standing Army) 사이에 무력 충돌이 일어난 후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는 화해불능의 상황이 지속되었다.

바로 전 해인 1774년 10월 제1차 대륙회의는 폐회에 앞서 만약 영국이 미국인의 항변(redress the grievance)을 구제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1775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새로운 회기를 개최할 것을 결의했다(Maier, 1997: 3). 이 당시에만 해도 절대 다수의 식민지 주민은 식민지와 본국 사이에의 마찰은 종국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대륙회의도 지속적으로 선조 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신성한’(most sacred), 자유로운 영국인으로서의 권리와 특권(rights and privileges of a free Englishman)이 침해되는 것은 감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도, 식민지는 영국에 대한 충성을 견지한다고 선언했다. 제1차 대륙회의는 영국의회가 제정한 ‘참을 수 없는 법률’(Intolerable Acts)에 대해 매사추세츠 주민이 저항한 사실을 찬양하면서 만약 영국 정부가 이를 법률들을 강제로 시행하려고 시도할 경우에는 모든 미국인이 함께 저항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매사추세츠 주민은 ‘평화롭고 침착하게 방어적으로’(peaceably and firmly ..... on the defensive) 사태를 주시하여 국왕이 자신들의 청원에 답하기 이전에 ‘미국 전체가 내전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는 불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촉구하였다. 구체적으로 대륙회의는 국왕에게 식민지가 1763년 이전의 상태로 복귀된다면 평화와 조화(peace and harmony)가 이루어질 것이라도 다짐했다(Records of the First Continental Congress, September 5 - October 26, 1774; Edmund S. & Morgan 1953; Maier, 1974). 그러나 1774년 겨울과 이듬해 봄이 이르도록 영국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예정된 제2차 대륙회의의 개회를 3주 앞둔 4월 19일 Lexington과 Concord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황급히 소집된 제2차 대륙회의(The Second Continental Congress)는 제1차 회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모임이었다. 제2차 대륙회의는 개시된 전쟁을 수행하고 새로 탄생할 국가의 유일한 정부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 기구는 전쟁이 종료된 1781년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이 채택될 때까지 유일한 합법적인 과도 정부의 역할을 수행했고, 이 정부가 발표한 최초의 국가

문서가 독립선언서인 것이다.<sup>5)</sup>

### (3) 초안과정

제2차 대륙회의가 진행 중인 1776년 6월 7일, 버지니아식민지의 대표 Richard Henry Lee(1732-1794)는 연합식민지가 자유로운 독립국가임을 선언할 것(to declare the United Colonies free and independent)을 결의하는 동의안(resolution)을 제출하였다. 이 안은 근소한 차이로 통과되었고 6월 10일 독립선언서를 기초할 5인의 기초위원(Thomas Jefferson, John Adams, Benjamin Franklin, Roger Sherman, Robert R. Livingston)이 선출되었다. 위원회는 토마스 제퍼슨에게 초안의 작성을 위임하였고 6월 28일 그가 제출한 초안을 심의, 확정했다 (Boyd, 1945: 28-31).<sup>6)</sup> 이에 대륙회의는 수정을 가한 후에 1776년 7월 4일, 미합중국 13개 주의 만장일치의 선언으로 독립을 선포했다.<sup>7)</sup>

후일 Jefferson이 술회했듯이 이 문서에 담긴 정치철학은 “새로운 원리를 고안해 낸 것이 아니고 기존의 특정 문서에서 모방한 것도 아니며, 미국인의 보편적인 생각(American mind)을 표현하려고 했을 뿐이다.”(Ford 역음, 1892-99: 343; Boyd, 1945: 3)

제퍼슨은 당시 영국, 미국의 지식인에게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상가들의 이론에서 아이디어를 원용했다.<sup>8)</sup> 특히 John Locke의 『제2 시민정부론』(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 1690)은 미국인의 입장에서 독립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강력한 이론적 무기가 되었다(John Locke, 1952). 영국인의 입장에서는 Locke의 저술이 자신들의 명예혁명(1688)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대한 이론서로 알려져 있었기에 더욱 더 당혹스러운 일이기도 했다.

독립선언은 반란의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이미 발생한 반란행위가 불가피했음을 사후에 정당화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Jefferson은 구체적인 불만 사설(grievances)을 열거하기 이전에 독립의 철학적 정당성을 천명하는 정치철학을 문서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5) "In Congress, July 4, The Unanimous Declaration of the thirteen United States"라는 어구가 선언의 주체가 미합중국임을 명기하고 있다.

6) 5인 위원회의 수정은 지극히 미세한 자구수정에 불과했다.

7) 의회는 3차에 걸쳐 수정을 가했고, 1차 16군데, 2차 31군데, 3차, 39군데에 걸쳐 내용과 자구를 수정했다(Boyd, 1945: 31-36). 가장 중요한 수정은 영국국왕에 대한 고발 중 노예제의 유지를 비판하는 부분이었다. 의회는 이 부분을 전면적으로 삭제하였고 후일 제퍼슨은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Gerber, 1995: 21-22).

8) Aristotle, Cicero 등 고대 사상가에서 Grotius, Pufendorf, Vattel, Burlamaqui, Montesquieu 등 대륙의 사상가, 그리고 Hoadley, Locke, Sidney, Buchanan과 같은 "영국 자유지상주의자"(English libertarian)들의 저술에서 권위를 빌었다(Mullett, 1933: 7; Boyd, 1945: 3)

그러나 모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선언을 천명하기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에 걸친 논의가 소요되었다. 많은 미국 식민지인들은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후에도 여전히 타협을 통해 모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것을 기대했다. ‘독립전쟁’이 대영제국 내에서의 모국과 식민지 사이에 무력 분쟁인 이상 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다. 국제사회에서 기회가 닿는 대로 영국에 세력 확대에 대한 견제에 나섰던 프랑스도 미국식민지에 대한 군사 지원에 앞서 영국과의 관계를 청산할 확고한 의지의 천명을 것을 요구했다. 독립선언은 세계에 대해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함과 동시에 무력의 지원을 요구하는 탄원서이기도 했다(Gerber, 1995: 19-20).

## II. 독립선언서의 구성

### 1. 텍스트 구성

독립선언서를 텍스트로 분석할 때, (a)前文(preface) (b)구체적 사실의 열거 (c)결론(conclusion)의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 전문 부분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민주주의의 정치철학의 원리를 제시한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을 이룬다. 제2부에서는 영국 국왕의 구체적인 압제의 예를 열거한다. 제3부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과, 영국과의 전쟁을 선언함으로써 문서를 종결한다.

결론의 제1부와 2부는 근본적 성격이 다름에서 불구하고 문서가 지향하는 논리와 목표에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외형적으로는 구체적인 불만을 근거로 한 혁명과 독립을 선언한 연유가 주된 내용으로 보이나, 기실 핵심의 내용은 영국제국의 정치체제를 유념하면서 천명한 정부론의 일반원칙이다. 일반적인 정부론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영국의 정부형태와 정치체제는 명시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2부에 열거된 사실들은 영국적 제도에 대한 위반임을 암시적으로 연결하고 있다(Becker, 1970 : 18-19).

### 2. 이론적 함의

#### (1) 국왕 대 의회

독립선언서에는 ‘영국의회’(Parliament)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다. 이 사실은 최소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식민지인들의 헌법이론에 의하면 식민지는 국왕에 대한 충성의무만 부담할 뿐, 의회에 대해서는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영국에 대해 지는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국왕(King)을 매개체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논리였다. 영

국의회는 식민지를 직접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이러한 식민지의 헌법이론은 Edmund Burke를 수장으로 하는 전통적인 영국헌법이론과는 정면으로 배치한다. 소위 ‘사실상 대표’(virtual representation) 이론에 의하면 영국의회가 모든 속령(dominion)에 대해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보유한다(Encyclopedia Americana Vol. IV, 1988: 793-795). 대영제국 정부에 대한 각종 항의는 인지(印紙)법(the Stamp Act), 보스톤항구법(the Boston Port Bill) 등 각종 입법적 조치에 집중된 것이었다. 영국의회의 권한에 관한 이러한 논쟁이 가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선언서 그 자체에는 ‘의회’라는 기관이 직접 언급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왕의 행위에 수동적으로 연관된 ‘기타 기관’(others)<sup>9)</sup>이나 ‘영국 동포의 입법부’<sup>10)</sup>로 간접적으로 묘사되었을 뿐이다.

둘째, 이렇듯 영국의회를 직접적인 공격의 표적으로 삼지 않았던 것은 정치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기도 했다. 당시 영국의회 내에서 식민지의 주장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의원도 상당수 있었기에 인기가 없는 국왕 George 3세에 대해 공격의 표적을 집중함으로써 의회와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시기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고려일 수도 있다(Peltason, 1997: 6).

## (2) 신민(臣民)에서 국민(國民)으로

독립선언서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독립 이전에 끊임없이 논의되던 ‘영국신민(英國臣民)의 권리’(rights of British subjects)라는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표 없는 과세 없다’(No tax without representation)라는 구호가 상징하듯이 식민지인들은 영국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효력을 자신들이 보유한 영국 신민의 권리를 근거로 다투었다. 즉 영국의회는 영국 신민에 대해 그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으며, 영국의회에는 식민지 대표의 참여가 하용되지 않았음을 비판하였다. 식민지가 10년 이상 ‘영국신민의 권리’를 두고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독립선언서에는 이 권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영국신민의 핵심적 권리로 인식되어 왔던 배심재판권(trial by jury)도 영국신민의 권리라는 핵심 수식어 없이 열거되어 있다.<sup>11)</sup> ‘자유로운 영국법제’(The system of free English laws)도 언급되어 있지만<sup>12)</sup> 이들 법률의 효력이 영국의 법률(English laws)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둔 것이라는 명시적, 묵시적 주장이 없다.

이렇듯 독립선언서에 ‘영국신민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결여된 것은 영국의회

9) “He has combined with **others** to subject us to a jurisdiction foreign to . . .” (para. 16,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0) “We have warned them. . . of attempts by **their legislature** to extend an unwarrantable jurisdiction over u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결론 부분).

11) Para 21,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12) Para 23,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와 유사한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즉 영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고 국왕 대신 국민(people)이 주인이 되는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의 출범을 선언하면서 영국신민의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이다.<sup>13)</sup>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는 후일 제정된 연방헌법의 전문에 분명하게 천명된다. “우리들 미합중국 국민’(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은… 이 헌법을 제정한다”(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라는 선언은 바로 군주주권에 복속하는 신민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 개인의 지위가 바뀌었음을 선언한 독립선언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이다.

### III. 본 문 주석

#### 1. 前文 (Preface)

When in the Course of human events, it becomes necessary for one people to dissolve political bands which have connected them with another, and to assume among the powers of the earth, the separate and equal station to which the Laws of Nature and of Nature's God entitle them, a decent respect to the opinions of mankind require that they should declare the causes which impel them to the separation.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에서 우리는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가지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다.

‘민족’(people)<sup>14)</sup>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등장하는 최초의 예이다. 식민지인과

13) “만약 독립선언서가 ‘우리는 우리의 동의 없이 과세 받지 않을 영국신민의 권리가 있음을 자명한 진리로 신봉한다’라고 시작했다면 어떻게 인류의 보편적 양심에 호소할 수 있었겠는가?” (Becker, 1970: 21)

14) 여기에서의 people은 헌법의 제정자인 people(국민)과는 다른 개념이다. 여기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경우를 유념하여 특정 국가를 구성하는 인적요소의 집적체를 말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미국사연구회의 번역의 예에 따라 ‘민족’으로 번역한다(미대사관 공보원은 ‘한 인민’으로 번역하였으나 한국어의 어감에 적합하지 않고 생각된다).

영국정부 사이에 벌어진 논쟁 중의 하나가 식민지인이 영국인과 동일한 민족인가, 별개의 민족인가였다. 미국인(Americans)의 주장에 따르면, 역사적으로는 영국인과는 연결되어 있었지만 ‘본질적인’(integral) 것이 아니었고, 식민지 스스로 별개의 주체를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독립국가 사이의 평등은 ‘자연법’(laws of nature)이라는 개념으로 등장했고 이후에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으로 발전했다. 미국에서 자연법적 의미의 ‘국제법’ 관념은 남북전쟁과 노예해방과 관련하여서도 논의의 배경이 되었다(Farber & Sherry, 1990: Ch. 9)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that they are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inalienable Rights, that among these are Life, Liberty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men)의 현대적 용법은 persons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주장은 당시에 보편적으로 수용된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은 아니다. 독립선언도 모든 사람이 모든 관점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다만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각각 일정한 불가양도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권리 중에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한 것이다. 이들 권리は生來的權利(birthrights)로, 국가로부터 받은 은전도 타인으로부터 받은 선물도 아니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모든 인간의 생래적 평등이 아니라 일정한 생래적 권리의 평등한 향유를 믿었을 뿐이다. 기초위원회의 멤버였던 John Adams의 글 속에 당시의 보편적인 인식을 추정할 수 있다(Koch, 1965: 222).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모든 인간의 생래적 권리를 신봉한 사람들이 어떻게 노예제를 존치시킬 수 있는가? 독립선언서에는 흑인과 백인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제는 적어도 필요악임을 인식하였고, 따라서 조만간에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Peltason, 1997: 4). Jefferson의 최초의 초안에는 영국국왕의 폭정과 비행 중에 미국식민지에 노예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생명과 자유의 가장 신성한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잔인한 전쟁을 수행한<sup>15)</sup> 것을 열거하였으나 노예주의 대표

15) “waging cruel war against human nature itself, violating its most sacred rights of life & liberty, in the persons of a distant people who never offended him,

자들의 반대에 부딪쳐 삭제되었다.

생명(life), 자유(liberty)와 행복추구(pursuit of happiness)의 보장은 미국헌법의 중요한 지도원리가 된다. 이 문구는 Locke의 3대 자연권(생명, 자유, 재산)의 부연일수도 변용일 수도 있다. Locke의 '재산'이 '행복추구'라는 어휘로 대체된 것은 Jefferson의 기여라고 볼 수 있다.<sup>16)</sup> Samuel Adams 등 Locke의 추종자들은 Locke의 3대 자연권을 그대로 수용함에 만족했지만 Jefferson은 이를 행복추구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체함으로써 Locke가 휘그주의적 영국중산층에 선사한 재산권이라는 고전적 자유권의 범주를 넘어서 개념을 설정하였다(Parrington, 1920; Boyd, 1945: 3~4)에서 재인용. 이러한 시도는 후일 사회적 권리(social rights)라는 개념의 탄생을 위한 배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후일 연방헌법이 제정되면서 수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생명'과 '자유'와 함께, 독립선언서의 '행복추구' 대신 '재산'(property)이는 Locke의 3대 자연권 개념이 회복되었다.<sup>17)</sup> 재산권의 중요성은 미국헌법이 천부인권 중에 재산이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한 Locke의 자유주의 사상을 전승한 것이라는 주장은 강력하게 뒷받침한다(Locke, 1952: 222, 225, 230).

독립선언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인 동시에 공화국(republic)이라는 새로운 통치의 원리를 선언하는 혁명의 선언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치철학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문언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가는 국민의 동의 아래 탄생하였고(Locke, 1952: 104)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국민 스스로 다스린다는, '治者와 被治者의 自動性'의 원리를 선언하였다. 독립선언에 6주 앞서 버지니아주는 권리장전을 포함한 주 헌법을 제정하였다. 독립선언에 담긴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 담겨 있다.<sup>18)</sup>

---

captivating & carrying them into slavery in another hemisphere, or to incur miserable death in their transportation thither." (Becker, 1970: 166-167).

16) (개인의) 행복이 국가의 목적이라는 사상은 연조가 깊고 John Adams, James Otis, Alexander Hamilton, George Mason 등 독립혁명 당시의 지식인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특히 Hobbes의 친구인 John Hall은 1651년에 출판한 저술, *The Grounds and Reasons of Monarchy Considered*에서 행복의 추구는 자연권이라는 주장을 냈다. "My natural liberty, that is to say, to make my life as just happy and advantageous as I can. . ." (Boyd, 1945: 4)

17) "nor be deprived of life, liberty, or property, without due process of law. . ." Amendment V; Section 1, Amendment XIV, U. S. Constitution.

18) 다만 생명, 자유와 함께 재산권에 대한 조항과 행복과 안녕 추구권이 동시에 규정되어 있다. "That all men are by nature equally free and independent, and have certain inherent rights, of which, when they enter into a state of society, they cannot by any compact deprive or divest their posterity; namely, the enjoyment of life, liberty, with the means of acquiring and possessing property, and pursuing and obtaining happiness and safety."

That to secure these rights, Governments are instituted among Men, deriving their just powers from the consent of the governed.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피치자의 동의에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은 이미 존재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조직했다. 자연상태, 자연권, 자연법, 사회계약 등의 개념은 당시의 미국지성인에게 이미 익숙한 정치사상이다(Locke, 1952: 104).

That whenever any Form of Government becomes destructive of these ends, it is the Right of the People to alter or to abolish it, and to institute new Government, laying its foundation on such principles and organizing its power in such form, as to them shall seem most likely to effect their Safety and Happiness.

따라서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는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의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피치자의 동의에 기초하여 성립된 정부는 피치자의 동의를 상실하면 존립의 근거를 상실한다. 정부 설립의 목적을 파괴한 정부를 국민이 전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은 목적을 상실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관념은 사회계약이론에 의해 쉽게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서에 선언된 혁명권은 엄격한 의미의 법적 권리는 아니다. 어떤 헌법도 폭력에 의한 혁명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혁명은 이미 실정법의 체계와 범주를 벗어난 일이다.<sup>19)</sup>

Prudence, indeed, will dictate that Governments long established should not be changed for light and transient causes: and accordingly, all experience hath shown, that mankind are more disposed to suffer, while evils are sufferable, than to right themselves by abolishing the forms to which they are accustomed.

실로 인간사를 숙려해 볼 때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는 경미하고도 일시적인 이유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자신에게 익숙한 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그 폐해를 최대한으로 감내하는 습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경험의 입증하는 바이다.

이는 혁명이라는 예외적이고 비상적인 상황에 이르기까지 거쳐야만 할 사전

---

19) 2차 대전 후 1949년 제정된 서독헌법(본기본법)의 예와 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나 저항권(20조 4항)을 명문의 실정법적 권리로 인정한 예는 몹시 드물다.

단계가 있음을 강조하는 구절이다. 비록 국민이 자신의 정부를 전복할 권리를 보유하지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지극히 신중해야 한다는 “보수성”을 강조한다 (Becker, 1970: 16).

But when a long train of abuses, pursuing invariably the same Object evinces a design to reduce them under absolute Despotism, it is their right, their duty to throw off such Government, and to provide new Guards for their future security, Such has been the patient sufferance of these Colonies' and such is now the necessity which constraints them to alter their former Systems of Government. The history of the present King of Great Britain is a history of repeated injuries and usurpations, all having in direct object the establishment of an absolute Tyranny over these the States.

그러나 오랜 시일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 없이 인민을 절대 전제정체에 예속시키려는 동일한 목적을 위한 것임이 명백해 진 때에는, 이러한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녕을 위해 새로운 보호자를 강구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작금에 이르기까지 식민지가 감내해 온 고통이 바로 이러한 것인즉 이제는 낡은 정부 제도를 혁신해야 할 절박한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제국의 현왕의 치적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의 연속이었으며, 그것은 이 땅에 절대 전제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노골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 2. 구체적 사항의 열거

To prove this, let the Facts be submitted to a candid world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의 사실들을 만천하에 고발하여 공정한 판단을 구하는 바이다.

이 문서에 열거된 구체적인 폭정과 비행의 예는 오늘날 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일부 고발사항은 아무런 구체적인 적시없이 결론적인 사실의 언급에 그치고 있다. 국왕으로서 조지 3세는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폭군이 아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따라서 고발은 특정 국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구체제와의 단절을 정당화하기 위한 형식적 요건의 제시에 불과한 것일지도 모른다.<sup>20)</sup>

(1) He has refused his Assent to Laws, the most wholesome and

---

20) “그들은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창조했기 때문이다.” (Becker, 1970 6)

necessary for the public good.<sup>21)</sup> (2)He has forbidden his Governors to pass the Laws of immediate and pressing importance, unless suspended in their operation till his Assent should be obtained; and when so suspended, he has utterly neglected to attend them.

(1)국왕은 공공의 선을 위해 긴요한 법률의 제정에 동의를 거부하였다. (2)국왕은 총독으로 하여금 법률을 제정할 절체절명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는 이를 제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으며, 동의를 요청한 경우에도 성의 있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3)He has refused to pass other Laws for the accommodation of large districts of people, unless those people would relinquish the right of Representation in the Legislature, a right inestimable to them and formidable to tyrants only. (4)He has called together legislative bodies at places unusual, uncomfortable, and distant from the depository of their public Records, for the sole purpose of fatiguing them into compliance with his measures.

(3)국왕은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선거구를 조정하는 법률에 대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인민에게 더할 수 없이 소중한 권리이며 군주에게는 두려운 권리인 입법부에 대표자를 선출할 권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4)국왕은 오로지 대표자를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정책에 복속하도록 만들 목적으로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편한, 공적기록의 보관소로부터 원격지에 의회를 소집하였다.

(5)He has dissolved Representative repeatedly, for opposing with manly firmness his invasions on the rights of the people. (6)He has refused for a long time, after such dissolutions, to cause others to be elected; whereby the Legislative powers, incapable of Annihilation, have returned to the People at large for their exercise; the State remaining in the meantime exposed to all dangers of invasion from without, and convulsion within.

(5)국왕은 민회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해 단호히 항의했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민회를 해산하였다.<sup>22)</sup> (6)국왕은 이렇게 해산된 민회의 대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입법권은 전면적으로 폐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민에게 되돌아 왔지만, 그 결과 식

---

21) 원문에는 구체적 사항을 적시한 paragraph의 번호가 매겨져 있지 않았고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번호 매김의 관행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적된 행위마다 별개의 번호를 매기는 것으로 한다.

22) 미국사연구회는 '민의원'으로 번역하였으나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 개인을 지칭하는 용어로만 적합하다고 생각되어 민회로 번역한다.

민지는 온갖 내우외환의 위험에 직면하였다.

(7)He has endeavoured to prevent the population of these States; (8)for that purpose of obstructing the Laws for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9)refusing to pass others encourage their migration hither, and (10)raising the conditions of new Appropriations of Lands.

(7)국왕은 식민지의 인구 성장을 억제하는 데 골몰했다. (8)이러한 목적으로 외국인의 귀화법에 반대했고, (9)식민지로의 이민을 권장하는 법에 반대했으며, (10)토지의 새로운 취득에도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하였다.

(11)He has obstructed the Adminstration of Justice by refusing his Assent to Laws for establishing judiciary powers. (12)He has made Judges dependent on his Will alone, for their tenure of their offices, and the amount of their salaries.

(11)국왕은 사법부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인준을 거부함으로써 사법정의의 수립을 방해하였다. (12)국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에 관해 오로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의적으로 결정하였다.

판사의 임기는 1701년 왕위계승법(Act of Settlement)에 의해 “특별한 비행이 없는 한 종신”(during good behavior)이 보장되었다.<sup>23)</sup> 이러한 영국의 전통은 연방헌법 제3조에 명문으로 계승된다.<sup>24)</sup>

(13)He has erected a multitude of New Offices, and sent hither swarms of Officers to harass our people, and to eat out their substance. (14)He has kept among us, in times of peace, Standing Armies, without the consent of our legislatures.

(13)국왕은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창설하여 수많은 관리를 파견하여 이 땅의 인민을 괴롭히고 재산을 탕진케 하였다. (14)국왕은 평화시에도 우리의 의회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국왕의 상비군(standing army)의 위험에 대한 식민지 미국인들의 경계가 후

23) **An Act for the further Limitation of the Crown, and better secur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Subject.** “... judges commissions be made *quamdiu se bene gesserint*, and their salaries ascertained and established. . . .”

24)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r and shall, at states times, receive for their services, a Compensation, which shall not be diminished during their Continuance in Office.” Section 1, Article III, U. S. Constitution.

일 연방헌법에 민병대(militia)를 유지하고 무기를 소장할(right to bear arms)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게 된 연유가 되었다(안경환, 1997: 123-131).<sup>25)</sup>

(15)He has affected to render Military independent of and superior to the Civil power. (16)He has combined with others to subject us to a jurisdiction foreign to our constitution, and unacknowledged by our laws; giving his Assent to their Acts of pretended legislation;

(15)국왕은 군대를 민간정부의 통제로부터 독립시켜, 오히려 그 상위에 두려 시도하였다. (16)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을 부정하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은 사법권에 우리를 예속시키려 도모했으며, 식민지에 대해 입법권을 침침하는 여러 법률들을 허가하였다.

“우리의 헌법”(our constitution)이란 특정한 헌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통용되고 있던 일반적인 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회의 입법권 논쟁이 독립선언에 이르게 된 핵심적인 쟁점이었음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다.<sup>26)</sup> 영국헌법상 의회와 국왕, 양자가 입법기관을 구성하며 이는 “의회 내의 국왕”(King in Parliament)이라는 헌법적 용어로 상징된다. 구체적으로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대해 국왕이 동의(royal assent)를 부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른 기관”은 의회를 암시한다.<sup>27)</sup>

(17)For quartering large bodies of armed troops among us: (18)For protecting them, by a mock Trial, from punishment for many Murders which they should commit on the inhabitants of these States:

(17)대규모의 군대를 이 땅에 주둔시키고, (18)이들이 이 땅의 주민들을 살육해도 처벌하기는커녕 오히려 기만적인 재판을 통해 이들을 비호하였고,

평화시에 민간 가옥에 대한 군대의 숨營을 금지하는 헌법 수정 제3조 (Military Amendment)<sup>28)</sup>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25)“A well regulated Militia, being necessary to the security of a free state, the right of the people to keep and bear Arms, shall not be infringed.”Amendment II, U. S. Constitution.

26) 註9)-11) 본문 참조.

27) 註9) 참조.

28) “No Soldier shall, in time of peace, shall be quartered in any hous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wners, nor in time of war, but in a manner prescribed by the law.” Amendment III, U. S. Constitution.

(19)For cutting off our Trade with all parts of the world: (20)For imposing taxes on us without our Consent: (21)For depriving us in many cases, of the benefits of Trial by Jury:

(19)전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였고 (20)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였으며 (21)많은 경우에 배심재판의 혜택을 박탈하였으며

배심재판은 영국법제의 핵심적 내용에 속한다.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효과적인 견제책으로 인식되어 미국헌법에 채택되었고, 개별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의 성격보다도 사법주권의 보유자인 국민이 국정을 운영할 권리의 성격이 더욱 중요하다(안경환, 2001: 77-101; Arnar, 1998: Ch. 5).

(22) For transporting us beyond Sea to be tried for pretended offences: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해 우리를 바다건너 소환하였으며

당시에도 범죄의 발생지에서 재판이 행해지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이었다. 특히 동료에 의한 배심재판(trial by peer)을 받을 권리라는 영국신민의 핵심적 권리에 속했다.

(23) For abolishing the free System of English Laws in a neighbouring Province, establishing therin an Arbitrary government, and enlarging its Boundaries so as to render at once an example and fit instrument for introducing the same absolute rule into these Colonies: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 자유로운 영국의 법제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한 연후에, 그 영토를 확대함으로써 본보기 식민지로서 삼아 나머지 식민지에도 동일한 전제 통치를 도입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英國臣民의 權利”가 언급되어 있다.<sup>29)</sup>

(24)For taking away our Charters, abolishing our most valuable Laws, and altering fundamentally the Forms of our Governments:

우리의 認許狀을 박탈하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법률을 폐지하고 우리의 정부형태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였고,

(25)For suspending our Legislatures, and declaring themselves invested with power to legislate for us in all cases whatsoever:

---

29) 註11)본문 참조.

우리의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일체의 사항에 있어서 우리를 규율할 입법권을 그들이 보유한다고 참칭하는 법률에 동의한 것이다.

식민지에 대한 영국의회의 입법권의 유무 논쟁에 관한 식민지의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다.<sup>30)</sup>

(26)He has abdicated Government here, by declaring us out of his Protection and waging War against us. (27)He has plundered our seas, ravaged our Coasts, burnt out towns, and destroyed the lives of our people.

(26)국왕은 우리를 자신의 보호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고 우리를 상대로 전쟁행위에 돌입함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放棄하였다.

(27)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노략질을 자행하고, 해안을 약탈하고, 도시를 불태우고 우리들 동포의 생명을 유린하였다.

(28)He is at this time transporting large Armies of foreign Mercenaries to compleat the wars of death, desolation and tyranny, already begun with circumstances of Cruelty & perfidy scarcely paralleled in the most barbarous ages, and totally unworthy the Head of a civilized nation.

(28)국왕은 가장 야만의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었고 문명국의 원수로서는 도저히 양립불가한 잔혹과 배신의 상황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전제의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대규모의 외국의 용병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Jefferson의 초안에는 “스코틀랜드인과 기타 외국의 용병부대(Scots and other foreign mercenaries)”(Boyd, 1945: 35)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수정단계에서 스코틀랜드의 특정이 삭제되었다.

(29)He has constrained our fellow Citizens taken Captive on the High Seas to bear Arms against their Country, to become the executioners of their friends and Brethren, or to fall themselves by their Hands. (30)He has excited domestic insurrections amongst us, and has endeavoured to bring on the inhabitants of our frontiers, the merciless Indian Savages, whose known rule of warfare, is an undistinguished destruction of all ages, sexes and conditions.

국왕은 공해 상에서 체포된 우리의 동포 시민들로 하여금 조국을

---

30) 註9)-11) 본문 참조.

항한 무장 반역을 강요하였고, 동포 형제의 목숨을 뺏도록 강요하였으며,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들의 손에 의해 죽도록 강요하였다.

국왕은 우리들 내부에 반란을 선동하였고, 변경에 거주하는 우리들의 주민을 향해, 남녀노소, 신분에 무관하게 무차별 학살을 전쟁의 기본수칙으로 삼은 야만의 인디언을 동원하려 도모하였다.

이상에 열거된 29개 항목에 달하는 국왕의 행위는 모두 악의에 기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 악의는 열거된 매 행위의 악의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일반적 악의, 즉 식민지에 '절대적 전제정치'(absolute tyranny over the States)를 수립하려는 국왕의 악의라는 것이다. '만천하'(candid world)에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제시된 '사실들'(facts)은 그 자체로 반란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된 것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국왕의 악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었을 뿐이다. 고발된 매 행위에 논리적으로 필요한 부연설명을 생략한 채, 악행을 열거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악행이 모두 원천적인 악의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이다.<sup>31)</sup>

### 3. 결론

이와 같이 누적된 국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식민지는 즉시 독립을 선언하지 않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인내했다는 주장,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단절을 선언하기 앞서 요구되는 일종의 '정치적 적법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으로 결론부분이 시작된다.

In every stage of these Oppressions We have Petitioned for Redress in the most humble terms: Our repeated Petitions have been answered only by repeated injury. A Prince, whose character is thus marked by every act which may define a Tyrant, is unfit to be the ruler of a free people.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가장 겸허한 언사로 시정을 탄원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반복된 진정에 대한 응답은 반복된 박해뿐이었다. 이와 같이 그 본질이 모든 의미에서 전제군주임이 노정(露呈)된 국왕은 더 이상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는 부적합함이 밝혀졌다.

Nor have We been wanting in attention to our British brethren. We have warned from time to time of attempts by their legislature to

---

31) 이러한 서술방식이 독립선언서의 설득력을 배가시켜주었다는 주장이 있다. (Becker, 1970: 13-14)

extend an unwarrantable jurisdiction over us. We have reminded them of their circumstances of our emigration and settlement here. We have appealed to their native justice and magnanimity, and we have conjured them by the ties of our common kindred to disavow these usurpations, which, would inevitably interrupt our connections and correspondence. They too have been deaf to the voice of justice and of consanguinity. We must, therefore, acquiesce in the necessity, which denounces our Separation, and hold them, as we hold the rest of mankind, Enemies in War, in Peace Friends.

또한 우리는 영국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도 사정을 호소하는 데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영국의 회에 대해서도 부당하게 우리를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도를 보일 때마다 수시로 경고를 보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게된 원유를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 생래의 정의감과 아량에 호소한 바 있다. 우리는 그들도 같은 피를 나눈 동포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필시 우리를 뮤어 주었던 연결과 결속을 단절로 이끌게 되고 말 탄압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들 또한 정의와 동포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당위성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해서도 전시에는 적으로, 그리고 평화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We, THEREFORE, THE REPRESENTATIVES OF THE UNITED STATES, in General Congress, Assembled, appealing to the Supreme judge of the world for the rectitude of our intention, do, in the Name, and by authority of the good People of these Colonies, solemnly publish and declare

That these United Colonies are, and of Right ought to be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at they are Absolved from all Allegiance to the British Crown, and that all political connection between them and the State of Great Britain, is and ought to be totally dissolved; and that as Free and Independent States; they have full power to levy War, conclude Peace, contract Alliances, establish Commerce, and to do all other Acts and Things which independent States may of right do. And for the support of this Declaration, with a firm reliance on the protection of Divine Providence, we mutually pledge to each other our Lives, our Fortunes, and our Sacred Honor.

이에 '미합중국' 제주의 대표들은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진정한 의도를 전 세계의 지엄한 판단에 호소하는 바이며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 엄숙히 공개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들 연합 식민지는 우리들 스스로의 권리로 자유롭고도 독립된 국가이며, 영국 국왕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전면적으로 단절되고, 또 당연히 단절되어야만 한다. 자유롭고도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수행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외국과 동맹관계를 설정하며, 통상관계를 수립하여 독립국가로서 당연히 행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바이다. 이에 우리들은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다짐하는 바이다.

이 문서에서 “미합중국”(United States)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전까지는 “연합 식민지”(United Colonies)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독립을 선언한 주체가 미합중국인지 아니면 13개의 주권체인 주인지 문언만으로는 불분명하다. 이 문제는 후일 연방정부의 성격과 권한에 관한 논쟁에서 제기된다. 특히 대외적 문제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권한의 원천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연방대법원의 공식견해는 1776년을 기점으로 대외적 문제에 관련된 일체의 권한은 영국국왕으로부터 미합중국 정부에 위양되었고, 따라서 개별 주는 독립된 주권체로서 외국을 상대로 전쟁을 수행하거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거나 또는 어떠한 협상도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주권론(州權論)자들은 개별 주가 합동으로 독립을 선언하였기에 독립 전에 영국국왕이 보유했던 일체의 권한이 개별 주에 승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이렇듯 영국국왕의 권한을 승계한 개별 주가 연방정부를 창설한 것이다. 이렇게 창설된 연방정부의 구체적인 모습은 당초에는 묵시적 합의를 기초로 하였으나, 연합헌장(Articles of Confederations)과 연방헌법을 통해 형식을 갖추었다고 한다. 독립선언 당시의 본래의 의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남북전쟁에서 북부주(Union)의 승리를 계기로 연방대법원의 견해가 미국 전체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독립선언서 말미에는 대륙회의의 의장인 매사추세츠 대표 John Hancock을 필두로 한 56명의 서명이 부기되어 있다.

#### IV. 맷 음 말

독립선언서는 권리장전을 포함하는 연방헌법, 페더럴리스트 페이퍼(The Federalist Papers)와 함께 미국인의 3대 경전의 하나이다. 독립선언서에 선언된 정치철학과 원리는 연방헌법과 각 주의 헌법에 의해 구체화되었고, 새로운 정치적 실험을 시행하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George A

Billias, 1990). 우리나라의 기미 독립선언과 상해임시정부의 헌법에 미국의 독립 선언이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행해져 있지 않다. 이 문서의 주제 작업은 단지 법학도에 의한 자구적 의미의 해석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미국학도 전체의 공동과제로 남아 있다.

◆ 참고문헌 ◆

- 김철수. 1998. 「한국의 재통일을 위해」. 『기독교사상』. 468권. 12월. pp. 181-185.
- 미국사연구회 옮기고 역음. 1992. 『미국역사의 기본사료』. 서울: 소나무.
- 안경환. 1987. 「세계혁명」. 『법학』. 38-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49-53.
- \_\_\_\_\_. 1997. 「미연방헌법 수정 제2조 무기소장권의 의미」. 『법학』. 38-3/4.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23-131.
- \_\_\_\_\_. 1999. 『헌법학연구』. 5-1. 한국헌법학회. pp. 410-12.
- \_\_\_\_\_. 2001. 「미국헌법의 배심조항」. 『미국헌법연구』. 12호. 미국헌법학회. pp. 77-101.
- 안경환 · 김종철. 1999. 「영국법과 미국법의 비교연구(V) 법이론 (2)」. 『법학』. 40-2.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52-181.
-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 1987. 『살아있는 미국의 역사문서』. 주한미국대사관 공보원.
- 최대권. 1986. 『영미법』. 서울: 박영사. 부록 6. pp. 384.
- 황혜성. 1990. 루이 하츠의 '美國의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소고. 『美國學』. 13집. 서울대학교 미국학연구소. pp. 1-13.
- Amar, Akhil Reed. 1998. *The Bill of Rights Creation and Reconstruction*. Yale University Press.
- Baylin, Bernard. 1967, 1992. *Ideological Origins of the American Revolu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배영수 역. 1999. 『미국헌법의 이데올로기적 기원』. 서울: 새물결.
- Bancroft, George. 1934-75.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Vols. 4-7. Little Brown.
- Beard, Charles. 1913.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Macmillan. 양재열 · 정성일 역. 1998. 『미국헌법의 경제적 해석』. 신서원.
- Becker, Carl. 1970.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 Study in the History of Political Ideas*. Vintage Books.
- Billias, George A. ed. 1990. *American Constitutionalism Abroad-Selected Essays in Comparative Constitutional History*. Greenwood Press.
- Boyd, Julian P. 1945.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The Evolution of the text as shown in Facsimiles of Various Drafts by its Author, Thomas Jeffers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hase, Harold and Ducat, Craig. (ed. revised). 1973. *Corbin's The Constitution and What It Means Today 13th ed.* Princeton University.
- Edmund S. & Morgan, Helen M. 1953. *The Stamp Act Crisis: Prologue to*

- Revolution.*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Farber, Daniel A. & Sherry, Suzanna. 1990. *A History of the American Constitution.* West Publishing Co. Ch. 9.
- Ford, P. L. ed. 1892-99. *The Writings of Thomas Jefferson.* Vol. 10. New York: G. P. Putnam's Sons.
- Gerber, Scott Douglas. 1995. *To Secure These Right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New York University.
- Hartz, Louis. 1955. *The Liberal Tradition in America: An Interpretation of American Political Thought since the American Revolution.* Harcourt Brace Jovanovich.
- Koch, Adriene. 1965. *The American Enlightenment.* George Brasiller.
- Locke, John. 1952.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ed.). by Thomas Pearson. Macmillian.
- Maier, Pauline. 1974. *From Resistance to Revolution: Colonial Radicals an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Opposition to Britain, 1765-1776.* Knopf.  
\_\_\_\_\_. 1997. *American Scripture- Making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Random House.
- Mullett, Charles F. 1933. *Fundamental Law and the American Revolution.* Columbia University Press.
- Parrington, V. L. 1920. *Main Currents in Americana Thought: an American literature from the beginning to 1920.* Harcourt, Brace and Company.
- Peltason, J. W. 1997. *Understanding Constitution* 14th ed. Harcourt Brace.
- Perry, Ralph Parton. 1976.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Earl Latham ed.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Constitution* 3d ed. D.C. Heath & Co.
- Pocock, J. G. A. 1975. *The Machiavellian Moment: Florentine Political Thought and the Republican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 Ramsey, David. 1789. *History of the American Revolution.* 2 vols. Atkins & Son.
- Ryu, Paul K. 1997. *The World Revolution.* American West Independent Publishing.  
음선필 역. 1999. 『세계혁명』. 서울: 벽호.
- Wood, Gordon. 1969. *The Creation of American Republic 1776-1787.*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 Encyclopedia Americana. 1988. Vol. IV. pp. 793-795.
- Records of the First Continental Congress. 1774. September 5 - October 26. in JCC 1.

##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 Annotation

Kyong-Whan Ahn

*Professor of Law*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is an attempt to translate and annotate the American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to the Korean texts.

In the Introductory Part, the character of the American Independence Revolution is examined. Following a brief review of various interpretations of each 'school', the article discusses the backgrounds of the revolution and the drafting process of the Declaration. Although "the Consensus Theory" is adopted in principle, elements of the "republicanism" are copied when deemed proper.

In Part II, textual composition of the document is dissected, followed by the discussions 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Declaration,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from the "subject" of the monarch to the "people", the ultimate holder of the sovereignty.

In Part III, the full text of the Declaration are translated and annotated. Some improprieties of the preceding translations are mentioned with the suggestions of the alternatives. In annotating the texts, a special care has been taken to accomodate the preceding academic works in Korea to the highest level.